

# 변경보고서

1. 대상펀드

- 1)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2)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 3)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4)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2. 변경내용 : 연금저축계좌 도입관련 변경

3. 변경적용일 : 2013년 4월 1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현 행	변 경(안)
제 2 조 (용어의 정의)	8.“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 28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투자신탁내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u>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u>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 <u>수익증권을 환매하고</u>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10. “연금지급기준일” 11. “약정연금지급일” 12. “연금지급개시일”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제 2 조의 2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만 18 세 이상의 거주자에 한한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u>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u> 에 한한다.
제 2 조의 3 (세제혜택 등)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제)
제 25 조의 2 (투자방법등)	①투자자는 분기마다 300 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할 수 있다. (중략)	(삭제)
제 25 조의 3 (투자신탁의 투자기간등)	①이 투자신탁의 투자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중략)	(삭제)

제 28 조의 3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①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삭제)
제 28 조의 4 (연금의 지급개시)	①판매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을 개시한다.	(삭제)
제 28 조의 5 (연금의 지급방법)	①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중략)	(삭제)
제 28 조의 6 (투자신탁계약의 중도해지)	①수익자가 적립기간 만료전에 투자재산을 인출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한다. (중략)	(삭제)
제 52 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u>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u>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우측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의 사망

		<p>2. 천재·지변</p> <p>3. 가입자의 퇴직</p> <p>4. 가입자의 해외이주</p> <p>5. 사업장의 폐업</p> <p>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p> <p>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p>⑦제1항에 따른 수익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p> <p>⑧제1항에 따른 수익자의 경우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환매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p>
--	--	---

투자설명서 /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현 행	변 경(안)
연금저축 핵심 설명서	내용 생략	(삭제)
제 1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바. (우측 신설)	바.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전환형 구조 (단서조항 우측 신설)	나. 전환형 구조 또한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일부 환매 및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 부 11. 매입, 환매, 전환, 이전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단서조항 우측 신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다만, 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일부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집합투자기구계약의 이전	라. 집합투자기구계약의 이전 (이전 관련 내용 삭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전환/이전 수수료 및 해지가산세 삭제)

사항		
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세제관련 사항 (연금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나. 과세 <u>(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u> <u>(종전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과세 부분 삭제 및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과세 부분 추가)</u>
별첨	[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내용 생략)	[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제)